주택종합보험(2016)

(메리츠일반-특종/종합/가계성A-2-1804A)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입자 유의사항

이 가입자 유의사항은 일반적인 보험약관의 주요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자세한 사항 및 유의사항은 해당약관(보통약관, 특별약관)의 내용을따릅니다.

○ 보험계약전 알릴의무 위반

-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상해 및 질병관련 보장

- 이 보험이 상해 등 외래의 사고만을 보험금 지급대상으로 하는지, 질병도 보험금 지급대상으로 하는지, 몇 세까지 보장하는지 등 구체적인 보험금 지급사유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타인을 위한 계약

-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을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다수계약의 비례보상에 관한 사항

-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 포함)이 있을 경우에는 약관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주요내용 요약서

이 주요내용 요약서는 일반적인 보험약관의 주요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자세한 사항 및 유의사항은 해당약관(보통약관, 특별약관)의 내용을따릅니다.

1. 자필서명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 또는 공인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 청약철회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3. 계약취소

계약 청약시 보험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부본)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계약 체결시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또는 전자서명

을 포함함)을 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 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4. 계약의 무효(신체보장 관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다만, 단체의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않습니다.
- 만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 계약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나, 만 15세미만자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경우에는 그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5. 계약의 무효(재물 및 배상책임보장 관련)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목적에 이미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6. 보험료의 납입연체 및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약관에서 정하는 사항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7. 해지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8. 계약 전 · 후 알릴 의무

- 1) 계약 전 알릴의무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 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 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 2) 계약 후 알릴의무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아래와 같은 경우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 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 등
 - 보험목적에 대하여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

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경우 등

- 보험목적을 양도하거나 이동하는 경우 등
-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을 수용하는 건물의 구조를 변경. 개축. 증축 및 용도를 변경하여 위험이 변경된 경우 등
- 기타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경우
- 3) 회사는 "2) 계약 후 알릴의무"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9. 보험금의 지급절차(신체보장 관련)

회사는 약관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거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지급기일 초과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 제도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하여 드립니다.

10. 보험금의 지급절차(재물보장, 배상책임보장 관련)

회사는 약관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또한,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회사가 추정한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

급합니다.

11. 대위권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 한도 내에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회사 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 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주요 보험용어 해설

| 보험용어 | 용어 해설 |
|--------|--|
| 보험약관 | 보험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상호간에 이행 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것 |
| 보험증권 | 보험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 |
| 보험가액 | 재산보험에 있어 피보험이익을 금전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보험목적에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손해액(회사가 실제 지급 하는 보험금은 보험가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 보험가입금액 | 회사와 계약자간에 약정한 금액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 회사가 지급할 최대 보험금 |
| 보상한도액 | 회사와 계약자간에 약정한 금액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 회사가 책임지는 금액의 최대 한도 |
| 자기부담금 |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계약자 또는 피 보험자가 부담하는 일정 금액 |
| 보험기간 |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으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간 |
| 보험연도 | 보험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의 연도(당해연도 보험계약 해당일부터 다음연도 보험계약 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를 말함 |
| 영업일 |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 일" 및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날을 의미합니다. |

- 목 차 -

| 주 | 택 | 종합보험(2016) 보통약관 | ·· 1 |
|-----|---|---|-------|
| 제 | 1 | 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 ·· 1 |
| | | 제1조(목적) | 1 |
| | | 제2조(용어의 정의) | 1 |
| 제 | 2 | 관 보험금의 지급 | 2 |
| | | 제3조(보상하는 손해) | 2 |
| | |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 ··· 3 |
| | | 제5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 | 4 |
| | | 제6조(보험금의 청구) | 5 |
| | | 제7조(보험금의 지급절차) | 5 |
| | | 제8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 |
| | | 제9조(지급보험금의 계산) | |
| | | 제10조(손해방지의무) | |
| | | 제11조(현물보상) | |
| | | 제12조(잔존물) | |
| | _ | 제13조(대위권) | |
| 제 | 3 | 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 |
| | | 제14조(계약전 알릴 의무) | |
| | | 제15조(계약 후 알릴 의무) | |
| | | 제16조(사기에 의한 계약) | |
| 제 | 4 | 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 |
| | | 제17조(보험계약의 성립) | |
| | | 제18조(청약의 철회) | |
| | | 제19조(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 등) | |
| | | 제20조(계약의 무효) | |
| | | 제21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 |
| | | 제22조(보험의 목적에 대한 조사) ··································· | |
| TII | _ | 제23소(다인들 위한 계약) ··································· | |
| 세 | Э | | |
| | | 제24조(제1회 보험료 등 및 회사의 보장개시) | |
| | | 제25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 |
| | | 제26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제27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 |
| | | - 씨// | 1 () |

| 제 6 관 계약의 해지 및 보험료의 환급 등14 |
|-------------------------------|
| 제29조(계약의 해지) |
| 제30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15 |
| 제31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
| 제32조(보험료의 환급)15 |
| 제 7 관 분쟁의 조정 등16 |
| 제33조(분쟁의 조정) |
| 제34조(관할법원)16 |
| 제35조(소멸시효)16 |
| 제36조(약관의 해석)17 |
| 제37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의 효력)17 |
| 제38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17 |
| 제39조(개인정보보호)17 |
| 제40조(준거법)18 |
| 제41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
| 주택종합보험(2016) 특별약관19 |
| 가재 도난위험담보 특별약관19 |
| 실화(대물)배상책임위험 특별약관22 |
| 임차자배상책임위험(화재, 폭발, 파열) 특별약관28 |
| 잠금장치 교체비용(도난손해수습지원금보장) 특별약관35 |
| 급배수설비 누출위험부보장 특별약관36 |
| 건물에 부착된 유리위험부보장 특별약관37 |
| 건물위험부보장 특별약관38 |
| 상품다수구매자 보험계약 특별약관39 |
| 단체취급 특별약관(ㅣ)41 |
| 단체취급 보험료정산 추가특별약관(ㅣ) 43 |
| 단체취급 특별약관(॥)44 |
| 단체취급 보험료정산 추가특별약관(॥) 46 |
| 단체계약 특별약관47 |
| 단체계약 보험료정산 추가특별약관50 |
| 단체계약 보험기간 설정 추가특별약관 |
| 보험료분납 특별약관 |
|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별약관53 |
| <早丑1> |
| <早丑2> |
| 법률조문 해설 |
| 주요 민원/분쟁 사례 및 유의사항77 |

주택종합보험(2016) 보통약관

제 1 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목적)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 (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에 화재로 입은 손해에 대한 위험 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다음과 같습니다.
- 1. 계약 관련 용어
- 가.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 나. 피보험자: 보험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 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을 말합니다.
- 다.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 서를 말합니다.
- 라. 보험의 목적: 이 약관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물건으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건물 등을 말합니다.
- 2. 보상 관련 용어
- 가. 보험가입금액: 회사와 계약자간에 약정한 금액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 회사가 지급할 최대 보험금을 말합니다.
- 나. 보험가액: 재산보험에 있어 피보험 이익을 금전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보험목적에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손해액을 말합니다.(회사가 실제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가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다. 자기부담금: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부 담하는 일정 금액을 말합니다.
- 라 보험금 분담: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비율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 마. 대위권: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취득하는 법률상의 권리를 말합니다.
- 3. 이자율 관련 용어
- 가.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 나.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 보험개발원이 정기적으로 산출하여 공시 하는 이율로써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 또는 보험료의 환급을 지연하는 경우 등에 적

용합니다.

-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 가.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 나.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제 2 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보상하는 손해)

- ① 회사는 이 약관에 따라 보험의 목적에 우연하고 직접적이며 물리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서 보장하는 위험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 1. 잔존물 제거비용: 사고현장에서의 잔존물의 해체비용, 청소비용 및 차에 싣는 비용. 다만, 이 증권에서 보장하지 않는 위험으로 보험의 목적이 손해를 입거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제거됨으로써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2. 손해방지비용 :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 3. 대위권 보전비용 :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 4. 잔존물 보전비용 : 잔존물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다만, 제12조(잔존물)에 의해 회사가 잔존물을 취득한 경우에 한합니다.
 - 5. 기타 협력비용 :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청소비용】사고현장 및 인근 지역의 토양, 대기 및 수질 오염물질 제거비용과 차 에 실은 후 폐기물 처리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③ 이 계약에서 보험의 목적이라 함은 아래의 물건을 말합니다.
 - 1. 주택으로만 쓰이는 건물 중 다음의 것 또는 그 수용가재
 - 가. 단독주택
 - 나. 주택의 부속건물로서 가재만을 수용하는데 쓰이는 것
 - 다. 연립(다세대)주택, 아파트(주상복합아파트의 주거용도 부분 포함)로서 각 호(戶), 실(室)이 모두 주택으로만 쓰이는 것
- ④ 아래의 물건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1. 통화, 유가증권, 인지, 우표 및 이와 비슷한 것
 - 2. 귀금속, 귀중품, 보옥, 보석, 글그림, 골동품, 조각물 및 이와 비슷한 것
 - 3. 원고, 설계서, 도안, 물건의 원본, 모형, 증서, 장부, 금형(쇠틀), 목형(나무틀), 소프트웨어 및 이와 비슷한 것
 - 4. 영업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건(재고자산 포함)

- 5. 차량(자동2륜차 및 자동3륜차 포함). 선박. 항공기
- 6. 컴퓨터 시스템기록 또는 제작 및 복제비용
- 7. 총포류, 탄약, 폭발물
- 8. 동물, 식물, 농작물

【귀중품】무게나 부피가 휴대할 수 있으며, 점당 300만원 이상

- ⑤ 아래의 물건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의 목적에 포함됩니다.
 - 1. 건물인 경우
 - 가. 건물의 부속물 : 피보험자의 소유인 칸막이, 대문, 담, 곳간 및 이와 비슷한 것
 - 나. 건물의 부착물 : 피보험자의 소유인 간판, 네온사인, 안테나, 선전탑 및 이와 비 슷한 것
 - 다. 건물의 부속설비 : 피보험자의 소유인 전기, 가스, 난방, 냉방설비 및 이와 비슷한 것
 - 2. 건물이외 경우 :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내에 있는 것을 말하며, 피보험자 또는 동 거하는 친족(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의 범위와 같습니다. 이하 같습니다)의 소유물. 붙박이 가전제품(Built-In가전) 포함.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
- 2.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하기 위하여 피보험자의 친족 또는 고용인이 고의로 일으킨 손해
- 3. 지진 또는 분화 등의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
- 4.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테러 또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 단, 소요, 노동쟁의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여기서 소요라 함은 사변 및 폭동에 이르지 못하는 정치적 또는 사회적 소요를 말합니다.
- 5.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 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 또는 방사선을 쬐는것(照射)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 6.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및 이와 비슷한 풍재 또는 수재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 단, 건물에 부착된 유리는 풍재 또는 수재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며, 수조, 급배수설비(급배수설비에는 스프링클러나 설비나 자동적으로 작동하 는 소화용 살수장치로서 헤드, 배관, 경보장치, 탱크, 펌프 및 이의 부속기구응 포함 하지 않음) 또는 수관(이하 「급배수설비」)이 우연한 사고로 인해 누수 또는 방수됨 에 따라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 7. 자연발열, 자연발화, 마모, 내재적 결함, 재질 변경, 녹 및 부식, 누설, 쥐, 곤충, 해

- 충, 기후·온도 조건의 변화, 통상적인 해수면의 변화, 기타 점진적으로 작용하는 원인으로 생긴 손해. 단, 자연발열 또는 자연발화로 연소된 다른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8. 법률적으로 또는 실질적으로 정부 및 공공기관의 행위나 명령에 의한 몰수, 국유화, 징발, 파괴 또는 손상으로 생긴 손해
- 9. 공공설비(전기, 가스, 통신, 수도 또는 기타 에너지원)의 공급불능, 불량으로 발생한 손해
- 10. 도난, 망실 또는 분실 손해. 그러나 절도 또는 강도행위로 발생한 건물의 파손 손해는 보상합니다.
- 11. 외부적 힘에 의하지 않은 부속설비 및 가재에 생긴 손해
- 12. 피보험자나 고용인의 잘못된 운영이나 잘못된 기술로 인하여 전기·기계장비에 생긴 손해
- 13. 가재 또는 유리(건물에 부착된 유리 제외)의 파손손해. 그러나 화재, 낙뢰, 폭발, 붕괴, 사태, 자동차나 항공기와의 충돌, 항공기로부터 낙하물체와의 충돌, 소요, 노동 쟁의, 피보험자 또는 이들 법정대리인이 아닌 자의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행위로 인한 파손손해는 보상합니다.
- 14. 발전기, 여자기(정류기 포함), 변류기, 변압기, 전압조정기, 축전기, 개폐기, 차단기, 피뢰기, 배전반 및 그 밖의 전기기기 또는 장치의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단, 그 결과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15. 기관, 기기, 증기기관, 내연기관, 유압기 등의 물리적인 폭발, 파열이나 기계의 운동 부분 또는 회전부분이 분해되어 날아 흩어짐으로 인해 생긴 손해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제5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

- ① 보험의 목적에 손해가 생긴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합니다.
-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③ 회사가 제1항에 대한 손해의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필요한 증거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④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을 때에는 사고가 생긴 건물 또는 그 구내와 거기에 들어있는 피보험자의 소유물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제6조(보험금의 청구)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보험금 청구서(회사양식)
- 2.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 3. 기타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자료

제7조(보험금의 지급절차)

- ① 회사는 제6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또한,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보 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회사가 추정한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② 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부표1>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8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 ①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의 손해에 의한 보험금과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의 잔존물 제거비용의 합계액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다 만, 잔존물 제거비용은 손해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②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의 비용손해(잔존물 제거비용은 제외합니다)는 제9조(지급 보험금의 계산)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이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이를 지급합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아래 각 호의 손해에 의한 보험금은 보험증권에 별도로 정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 1. 급배수설비 누출로 생긴 손해
 - 2. 건물에 부착된 유리의 손해(유리의 부착비용 포함)
- ④ 회사가 손해를 보상한 경우에는 그 지급액(건물 및 가재의 지급액 합계)이 한 번의 사고에 대하여 보험가입금액(보험가액을 한도로 하며, 건물 및 가재의 보험가입금액 합계를 기준으로 계산)의 80% 해당액 이하인 때에는 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은 감액 되지 않으며, 80%를 넘을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계약은 소멸됩 니다.
-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3항에서 정한 손해를 보상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9조(지급보험금의 계산)

- ① 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은 아래에 따라 계산합니다.
 - 1. 회사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서의 가액에 따라 계산합니다.
 - 2. 건물은 재조달가액(보험의 목적과 동형·동질의 신품을 조달하는 데 소요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을 기준으로 계산한 손해액을 건물의 보험가입금액 내에서 보상합니다.
 - 3. 가재는 시가(재조달가액에서 감가상각이 반영된 금액)를 기준으로 계산한 손해액을 가재의 보험가입금액 내에서 보상합니다.
 - 4. 급배수설비 누출 손해는 제8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에서 정한 별도의 보험가입금 액 내에서 보상합니다. 단 건물은 재조달가액 기준, 가재는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손해액을 계산합니다.
 - 5. 건물에 부착된 유리의 손해(유리의 부착비용을 포함)는 제8조(보험금 등의 지급한 도)에서 정한 별도의 보험가입금액 내에서 재조달가액을 기준으로 보상합니다.
- ② 동일한 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고 이들의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이 보험가액보다 클 경우에는 아래에 따라 지급보험금을 계산합니다. 이 경우 보험자 1인에 대한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다른 보험자의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1.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이 같은 경우 :

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 손해액 ×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

2.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이 다른 경우 :

이 계약의 보험금 손해액 ×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험금의 합계액

③ 하나의 보험가입금액으로 둘 이상의 보험의 목적을 계약하는 경우에는 전체가액에 대한 각 가액의 비율로 보험가입금액을 비례배분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지급보험금을 계산합니다.

제10조(손해방지의무)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써야 합니다. 만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손해방지의무) 게을리한 때 에는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을 것으로 밝혀진 값을 손해액에서 뺍니다.

제11조(현물보상)

회사는 손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재건축, 수리 또는 현물의 보상으로서 보험금의 지급에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12조(잔존물)

회사가 제3조(보상하는 손해)제1항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잔존물을 취득할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 잔존물은 회사의 소유가 됩니다.

제13조(대위권)

-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 한도내에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1항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키는 것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또한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 ④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합니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제 3 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제14조(계약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 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계약전 알릴 의무】

상법 제651조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청약시에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위반시 보험계약의 해지 또는 보험금 부지급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이하 같습니다.)

제15조(계약 후 알릴 의무)

- ①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1.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 2. 양도할 때
 - 3.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을 수용하는 건물의 구조를 변경, 개축, 증축하거나 계속하여 15일 이상 수선할 때
 - 4.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을 수용하는 건물의 용도를 변경함으로써 위험이 변경되는 경우
 - 5.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이 들어있는 건물을 계속하여 30일 이상 비워 두거나 휴업하는 경우
 - 6. 다른 곳으로 옮길 때
 - 7.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③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알리지 않은 경우 회사가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회사가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제16조(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 4 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7조(보험계약의 성립)

-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 ②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보험료 전액 또는 제1회 보험료(이하 '제1회 보험료 등' 이라 합니다)를 받은 경우에는 청약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하 며 통지가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 ③ 회사가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증권을 계약자에게 교부하여 드리며, 청

약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④ 이미 성립한 계약을 연장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보험증권에 그 사실을 기 재함으로써 보험증권의 교부에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18조(청약의 철회)

①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전문보험계약자】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보험업법 제2조(정의), 보험업법시행령 제6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 등) 또는 보험업감독규정 제1-4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에서 정한 국가, 한국은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주권상 장법인, 지방자치단체, 단체보험계약자 등의 전문보험계약자를 말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③ 계약자는 청약서의 청약철회란을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거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제1항의 청약 철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④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 등을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 회사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⑤ 청약을 철회할 때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⑥ 제1항에서 보험증권을 받은 날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제19조(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광기록매체(CD, DVD 등), 전자우편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또한,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 1.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약관 및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문서를 읽거나 내려받 게 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가 이를 읽거나 내려받은 것을 확인한 때에 당해 약관을 드리고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 2.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전 알릴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는 방법. 이 경우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통신판매계약】전화·우편·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 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 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광기록매체】

CD, DVD 등 전자적방법의 기록매체를 말합니다.(이하 같습니다.)

제20조(계약의 무효)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의 목적에 이미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21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1. 보험종목

- 2. 보험기간
- 3. 보험료 납입주기, 납입방법 및 납입기간
- 4. 계약자, 피보험자
- 5.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등 기타 계약의 내용
- ②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 등을 납입한 때부터 1년 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으로 서 그 보험종목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 드립니다.
-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며, 제3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④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증권 및 약관을 교부하고 변경된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제22조(보험의 목적에 대한 조사)

회사는 보험목적에 대한 위험상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보험기간 중 언제든지 보험의 목적 또는 이들이 들어 있는 건물이나 구내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제23조(타인을 위한 계약)

- ①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② 타인을 위한 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 5 관 보험료의 납입

제24조(제1회 보험료 등 및 회사의 보장개시)

-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 ② 회사가 계약자로부터 계약의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경우에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계약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생긴 때에는 회사는 계약상의 보장 을 합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 1. 제14조(계약 전 알릴 의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 2.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6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20조(계약의 무효) 또는 제29조(계약의 해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 ④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 등을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 신청 및 신용카드매출 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회사에 제공한 때가 제1회 보험료 등을 납입한 때가 되나, 계약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 우에는 제1회 보험료 등이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⑤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보장은 기존 계약에 의한 보장 이 종료하는 때부터 적용합니다.

제25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을 포함합니다)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납입기일】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제26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는,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그 특정된 타인을 포함합니다)에게 다음의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계약상의 보장을 합니다.
 - 1.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그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
- ② 제1항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은 납입최고(독촉)의 통지가 계약자(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특정된 타인을 포함)에게 도달한 날부터 시작되며, 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
- ③ 회사가 제1항에 의한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을 설정하여 제1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④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3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계약 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7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제26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계약자가 제3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돌려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그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 + 1% 범위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14조(계약 전 알릴의무), 제 16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17조(보험계약의 성립), 제24조(제1회 보험료 등 및 회사의 보장개시) 및 제29조(계약의 해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28조 [강제집행 등의 절차에 따라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 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제3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의 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회사는 해지 당시의 피보험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21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피보험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한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 승낙하며, 계약은 청약한 때부터 특별부활(효력회복) 됩니다.
-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의 통지가 7일을 지나서 도달하고 이후 피보험자가 제1항에 의한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이 되는 날에 특별부활(효력회복) 됩니다.
- ④ 피보험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사법상 또는 행정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강제 권력으로 그의무의 이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담보권실행】

담보권을 설정한 채권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하여 해당 담보권을 실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할 경우 국세 기본법 및지방세법에 의하여 체납된 세금에 대하여 가산금징수, 독촉장 발부 및 재산 압류 등의 집행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 6 관 계약의 해지 및 보험료의 환급 등

제29조(계약의 해지)

- ① 계약자는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제14조(계약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때
 - 2. 뚜렷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된 제15조(계약 후 알릴 의무)에서 정한 계약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 ④ 제3항 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 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 1. 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지났을 때
 - 3.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 4.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보험설계사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 게 알릴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알리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릴 것을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렸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⑤ 제3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는 손해가 생긴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회사는 그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손해가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님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⑥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제30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 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제 3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1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지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고 후 3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회사는 제32조(보험료의 환급)에 의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2조(보험료의 환급)

- ① 이 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보험금이 지급되어 보험가입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감액된 보험가입금액을 기준으로 환급금을 계산하여 돌려드립니다.
 -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무효의 경우에는 회사에 납입한 보험료의 전액, 효력상실 또는 해지의 경우에는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한 보험료
 -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1년미만의 기간에 적용되는 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무효가 된 때에는 보험료를 돌려

드리지 않습니다.

- ② 보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계약이 무효 또는 효력상실인 경우에는 무효 또는 효력상 실의 원인이 생긴 날 또는 해지일이 속하는 보험연도의 보험료는 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고 그 이후의 보험연도에 속하는 보험료는 전액을 돌려드립니다.
- ③ 제1항제2호에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를 말합니다.
 -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임의 해지하는 경우
 - 2. 회사가 제16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29조(계약의 해지) 또는 제30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에 따라 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하는 경우
 - 3.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계약의 효력 상실
- ④ 계약의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로 인하여 회사가 돌려드려야 할 보험료가 있을 때에는 계약자는 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 7 관 분쟁의 조정 등

제33조(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 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4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35조(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소멸시효】

주어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 그 권리가 없어지게 되는 기간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 <u>3</u>년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이하 같습니다.)

제36조(약관의 해석)

-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 ③ 회사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37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의 내용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서류 등을 말합니다.

제38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 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 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39조(개인정보보호)

- ①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동의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제40조(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제41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예금자보호제도】

예금자보호제도란 예금보험공사가 평소에 금융기관으로 부터 보험료를 받아 기금을 적립한 후, 금융기관이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면 금융기관 을 대신하여 예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합니다.(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제 외)

예금자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보험금 또는 환급금 등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 호하지 않습니다.(이하 같습니다.)

주택종합보험(2016) 특별약관

가재 도난위험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 ① 회사는 보통약관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0호에도 불구하고, 보험기간 중에 보험의 목적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구내에 보관되어 있는 동안에 강도 또는 절도 (그 미수를 포함합니다)로 생긴 도난, 훼손 또는 망가진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② 도난당한 보험의 목적을 도로 찾는 경우 그에 소요된 정당한 비용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③ 가재를 보험의 목적으로 합니다.
- ④ 아래의 물건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1. 통화, 유가증권, 인지, 우표 및 이와 비슷한 것
 - 2. 귀금속, 보옥, 보석 또는 귀중품(무게나 부피가 휴대할 수 있으며 점당 300만원 이 상인 것. 다만 카메라, 캠코더, 휴대용컴퓨터, 가전제품 등의 생활용품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됩니다.)
 - 3. 글·그림, 골동품, 조각물 및 이와 비슷한 것
 - 4. 원고, 설계서, 도안, 물건의 원본, 모형, 증서, 장부, 금형, 목형, 소프트웨어 및 이와 비슷한 것
 - 5. 차량(자동2륜차 및 자동3륜차 포함), 선박, 항공기
 - 6. 동물, 식물, 농작물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도난
- 2. 피보험자의 가족, 친족, 고용인, 동거인, 숙박인 또는 감수인(監守人)이 저지르거나 가 담한 도난
- 3. 전쟁, 폭동, 민요(民擾) 또는 그 밖의 사변으로 생긴 도난
- 4. 화재나 지진, 분화, 해일, 폭발, 파열 또는 그 밖의 변재가 일어났을 때에 생긴 도난
- 5. 보험의 목적이 건물구내 밖에 있는 동안에 생긴 도난
- 6. 재고를 조사할 때 발견된 손해
- 7. 사기 또는 횡령으로 인한 손해
- 8. 보험의 목적이 들어있는 건물을 계속하여 72시간 이상 비워둔 사이에 생긴 도난
- 9. 외부로부터의 침입이 없이 생긴 분실 도는 망실의 손해

제3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

- ① 보험의 목적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자, 피보험자, 피보험자의 가족, 감수인 또는 당직자는 지체없이 이를 관할경찰서와 회사에 알리고 아래의 서류를 빠른 시일 안에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청구서(회사양식)
 - 2. 도난품의 명세서
 - 3. 관할경찰서의 도난신고확인서. 그러나 이를 얻기 어려울 때에는 두명 이상이 연대 보증하는 인근 주민의 확인서
-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위 제1항의 통지를 게을리하므로 인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③ 회사는 위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사고가 생긴 보관장소와 거기에 들어있는 보험의 목적과 기타물품 등 도난에 관한 사실 및 상황을 조사하고 피보험자, 그 가족, 사용인, 감수인 또는 당직자에 대하여 자세한 진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4조(보험금의 지급한도)

회사가 이 특별약관에서 지급하는 보험금의 총액은 각 보험연도(보험기간의 시작일로부터 1년 단위)별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5조(지급보험금의 계산)

- ① 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 1. 회사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서의 가액에 따라 계산합니다.
 - 2. 회사는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액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초과분을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 내에서 보상합니다. 동일한 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

을 포함합니다)이 있고 이들의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이 보험가액보다 클 경우에는 아래에 따라 지급보험금을 계산합니다. 이 경우 보험자 1인에 대한 보험금 청구를 포 기한 경우에도 다른 보험자의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이 같은 경우 :

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 손해액 ×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

2.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이 다른 경우 :

이 계약의 보험금 손해액 ×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험금의 합계액

③ 하나의 보험가입금액으로 둘 이상의 보험의 목적을 계약하는 경우에는 전체가액에 대한 각 가액의 비율로 보험가입금액을 비례배분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지급보험금을 계산합니다.

제6조(도난품의 귀속)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도난당한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보험금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로 소유권을 가집니다. 그러나 피보험자는 그 보험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사에 내고 그 도난품의 소유권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실화(대물)배상책임위험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 구내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을 망그러뜨려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아래의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 가. 피보험자가 제9조(손해방지의무)제1항 제1호의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 나. 피보험자가 제9조(손해방지의무)제1항 제2호의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 다.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 라. 보험증권상의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 회사는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 마. 피보험자가 제10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제2항 및 제3항의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유사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4.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 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그 재물 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 5. 피보험자와 타인 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 6.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7. 위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제3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

-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1.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 피해자의 주소와 성명, 사고상황 및 이들 사항의 증인이 있을 경우 그 주소와 성명
 - 2.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을 경우
 - 3.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송을 제기받았을 경우
-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 각호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않으며, 제1항제3호의 통지를 게을리 한 때에는 소송비용과 변호사비용도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상법 제657조 제1항에 의해 보험사고의 발생을 회사에 알린 경우에는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1호 및 제2호 '다'목 또는 '라'목의 비용에 대하여 보상한도액을 한도로보상하여 드립니다.

제4조(보험금의 청구)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보험금 청구서(회사양식)
- 2.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 3. 손해배상금 및 그 밖의 비용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4. 회사가 요구하는 그 밖의 서류

제5조(보험금의 지급절차)

- ① 회사는 제4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 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또한,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보 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회사가 추정한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의 지급보험금이 결정된 후 7일(이하 '지급기일'이라 합니다)이 지나도록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 여 <부표2>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될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제6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① 회사는 1회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이 경우 보상한도액과 자

기부담금은 각각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 1.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1호의 손해배상금 :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되, 자기부담금이 약정된 경우에는 그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부분만 보상합니다.
- 2.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2호 '가'목, '나'목 또는 '마'목의 비용 : 비용의 전액을 보상합니다.
- 3.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2호 '다'목 또는 '라'목의 비용 : 이 비용과 제1호에 의한 보상액의 합계액을 보상한도액내에서 보상합니다.
- ② 보험기간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회사의 보상총액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총 보상한 도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7조(의무보험과의 관계)

- ① 회사는 이 약관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하는 금액이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합니다. 다만, 의무보험이 다수인 경우에는 제8조(보험금의 분담)를 따릅니다.
- ② 제1항의 의무보험은 피보험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으로 서 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
- ③ 피보험자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가 가입했더라면 의무보험에서 보상했을 금액을 제1항의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으로 봅니다.

제8조(보험금의 분담)

①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아래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이 계약과 다른 계약이 모두 의무보험인 경우에도 같습니다.

이 계약의 보상책임액 손해액 ×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 ② 이 계약이 의무보험이 아니고 다른 의무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의무보험에서 보 상되는 금액(피보험자가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간주하여 제1항에 의한 보상할 금액을 결정합니다.
- ③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회사의 제1항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9조(손해방지의무)

- ①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1.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일(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를 포함합니다)
 - 2.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일
 - 3.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지급(변제), 승인 또는 화해를 하거나 소송, 중재 또는 조정을 제기하거나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는 일
-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 의한 손해에서 다음의 금액을 뺍니다.
 -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그 노력을 하였더라면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 던 금액
 -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었던 금액
 -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소송비용(중재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포함) 및 변호사비용과 회사의 동의를 받지 않은 행위에 의하여 증가된 손해

제10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 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약관에 의하여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한도내에서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가 제1항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필요한 서류증거의 제출, 증언 또는 증인출석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③ 피보험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 ④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2항, 제3항의 요구에 협조하지 않았을 때에는 회사는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11조(합의·절충·중재·소송의 협조·대행 등)

① 회사는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피해자와 행하는 합의·절충·중재 또는 소송(확인의 소를 포함합니다)에 대하여 협조하거나, 피보험자를 위하여 이러한 절차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 내에서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합니다.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동일한 사고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이나 가지급보험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액수를 말합니다.

- ③ 회사가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회사의 요청에 따라 협력해야 하며,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에 대해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④ 회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액이 보험증권에 기 재된 보상한도액을 명백하게 초과하는 때
 - 2.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않을 때
- ⑤ 회사가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 내에서, 가압류나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공탁금을 피보험자에게 대부할 수 있으며 이 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합니다. 이 경우 대부금의 이자는 공탁금에 붙여지는 것과 같은 이율로 하며, 피보험자는 공탁금(이자를 포함합니다)의 회수청구권을 회사에 양 도하여야 합니다.

제12조(대위권)

-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내에서 아래의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 1.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청구권
 - 2.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을 함으로써 대위 취득하는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대위권
-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1항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키는 것에 관하여 조치를 하여야 하며, 또한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③ 회사는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 ④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합니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제13조(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

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1. 청약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변경이 생겼음을 알았을 때
- 2.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 3.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③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알리지 않은 경우 회사가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회사가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제13조2(양도)

보험의 목적의 양도는 회사의 서면동의 없이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며, 회사가 서면 동의한 경우 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합니다. 다만, 의무보험인 경우에는 회사의 서면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청약서에 기재된 사업을 양도하였을 때 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제14조(조사)

- ① 회사는 보험목적에 대한 위험상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보험기간 중 언제든지 피보험 자의 시설과 업무내용을 조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개선을 피보험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이 계약의 중요사항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는 보험기간 중 또는 회사에서 정한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피보험자의 회계장부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제15조(준용규정)

임차자배상책임위험(화재, 폭발, 파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임차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부동산이 화재, 폭발, 파열로 인하여 생긴 손해로 그 부동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피보험자가 입은 아래의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 가. 피보험자가 제11조(손해방지의무)제1항 제1호의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 나. 피보험자가 제11조(손해방지의무)제1항 제2호의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 다.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 라. 보험증권상의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 회사는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 마. 피보험자가 제12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제2항 및 제3항의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제2조(피보험자의 범위)

피보험자(임차자)와 동거하는 친족, 동숙자, 일시 방문자나 피보험자의 친족 또는 동숙자가 고용한 자는 피보험자로 봅니다.

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1. 임차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2. 지진 또는 분화 등의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3.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테러 또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화재 및 연소 또는 그 밖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4.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 또는 방사선을 쬐는것(照射)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로 인한 배상책임
- 5. 피보험자와 타인 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 6. 지붕, 문, 창, 통풍장치 등에서 새어든 비 또는 눈 등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7. 배상책임의 목적인 임차부동산을 제외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8. 자연소모, 녹, 쥐가 쏠거나 벌레가 먹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9. 기관, 기기, 증기기관, 내연기관, 유압기 등의 물리적인 폭발, 파열이나 기계의 운동부분 또는 회전부분이 분해되어 날아 흩어짐으로 인해 생긴 손해
- 10. 사고로 생긴 것이 아닌 도장제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11. 가입여부를 묻지 않고 피보험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 (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 이하 의무보험이라 합니다)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대한 배 상책임

제4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

-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1.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 피해자의 주소와 성명, 사고상황 및 이들 사항의 증인이 있을 경우 그 주소와 성명
 - 2.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을 경우
 - 3.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송을 제기받았을 경우
-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 각호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않으며, 제1항제3호의 통지를 게을리 한 때에는 소송비용과 변호사비용도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상법 제657조 제1항에 의해 보험사고의 발생을 회사에 알린 경우에는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1호 및 제2호 '다'목 또는 '라'목의 비용에 대하여 보상한도액을 한도로보상하여 드립니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보험금 청구서(회사양식)
- 2.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 3. 손해배상금 및 그 밖의 비용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4. 회사가 요구하는 그 밖의 서류

제6조(보험금의 지급절차)

- ① 회사는 제5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 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또한,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보 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회사가 추정한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의 지급보험금이 결정된 후 7일(이하 '지급기일'이라 합니다)이 지나도록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 여 <부표2>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될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제7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 ① 회사는 1회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이 경우 보상한도액과 자기부담금은 각각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 1.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1호의 손해배상금 :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되, 자기부담금이 약정된 경우에는 그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부분만 보상합니다.
 - 2.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2호 '가'목, '나'목 또는 '마'목의 비용 : 비용의 전액을 보상합니다.
 - 3.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2호 '다'목 또는 '라'목의 비용 : 이 비용과 제1호에 의한 보상액의 합계액을 보상한도액내에서 보상합니다.
- ② 보험기간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회사의 보상총액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총 보상한 도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8조(지급보험금의 계산)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다만 보상한도액이 보험 가액보다 많을 때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배상책임의 목적인 임차물건에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 화재보험의 보험가입금액과 이 배상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의 합계액이 보험 가액을 초과(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 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의 전 기합계액(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이 계약과 다른 계약이 모두 의무보험인 경우에도 같습니다.

제9조(의무보험과의 관계)

① 회사는 이 약관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하는 금액이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초

과할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합니다. 다만, 의무보험이 다수인 경우에는 제 10조(보험금의 분담)를 따릅니다.

- ② 제1항의 의무보험은 피보험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으로 서 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
- ③ 피보험자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가 가입했더라면 의무보험에서 보상했을 금액을 제1항의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으로 봅니다.

제10조(보험금의 분담)

①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아래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이 계약과 다른 계약이 모두 의무보험인 경우에도 같습니다.

신기계약의 보상책임액손해액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계산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 ② 이 계약이 의무보험이 아니고 다른 의무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의무보험에서 보 상되는 금액(피보험자가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간주하여 제1항에 의한 보상할 금액을 결정합니다.
- ③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회사의 제1항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11조(손해방지의무)

- ①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1.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일(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를 포함합니다)
 - 2.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일
 - 3.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지급(변제), 승인 또는 화해를 하거나 소송, 중재 또는 조정을 제기하거나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는 일
-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 의한 손해에서 다음의 금액을 뺍니다.
 -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그 노력을 하였더라면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 던 금액

-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었던 금액
-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소송비용(중재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포함) 및 변호사비용과 회사의 동의를 받지 않은 행위에 의하여 증가된 손해

제12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 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약관에 의하여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한도내에서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가 제1항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필요한 서류증거의 제출, 증언 또는 증인출석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③ 피보험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 ④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2항 , 제3항의 요구에 협조하지 않았을 때에는 회사는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13조(합의·절충·중재·소송의 협조·대행 등)

- ① 회사는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피해자와 행하는 합의·절충·중재 또는 소송(확인의 소를 포함합니다)에 대하여 협조하거나, 피보험자를 위하여 이러한 절차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 내에서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합니다.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동일한 사고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이나 가지급보험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액수를 말합니다.

- ③ 회사가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회사의 요청에 따라 협력해야 하며,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에 대해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④ 회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액이 보험증권에 기 재된 보상한도액을 명백하게 초과하는 때
 - 2.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않을 때
- ⑤ 회사가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

내에서, 가압류나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공탁금을 피보험자에게 대부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합니다. 이 경우 대부금의 이자는 공탁금에 붙여지는 것과 같은 이율로 하며, 피보험자는 공탁금(이자를 포함합니다)의 회수청구권을 회사에 양도하여야 합니다.

제14조(대위권)

-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내에서 아래의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 1.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청구권
 - 2.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을 함으로써 대위 취득하는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대위권
-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1항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키는 것에 관하여 조치를 하여야 하며, 또한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③ 회사는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 ④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합니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제15조(계약 후 알릴 의무)

- ①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1. 청약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변경이 생겼음을 알았을 때
 - 2.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 3.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③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알리지 않은 경우 회사가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회사가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제15조2(양도)

보험의 목적의 양도는 회사의 서면동의 없이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며, 회사가 서면 동의한 경우 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합니다. 다만, 의무보험인 경우에는 회사의 서면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청약서에 기재된 사업을 양도하였을 때 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제16조(조사)

- ① 회사는 보험목적에 대한 위험상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보험기간 중 언제든지 피보험 자의 시설과 업무내용을 조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개선을 피보험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이 계약의 중요사항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는 보험기간 중 또는 회사에서 정한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피보험자의 회계장부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제17조(준용규정)

잠금장치 교체비용(도난손해수습지원금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험기간중에 가재 도난위험담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된 때에는 보험 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잠금장치 교체비용(도난손해수습지원금)으로 피보험자에 게 지급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도난
- 2. 피보험자의 가족, 친족, 고용인, 동거인, 숙박인 또는 감수인(監守人)이 저지르거나 가 당한 도난
- 3. 전쟁, 폭동, 민요(民擾) 또는 그 밖의 사변으로 생긴 도난
- 4. 화재나 지진, 분화, 해일, 폭발, 파열 또는 그 밖의 변재가 일어났을 때에 생긴 도난
- 5. 보험의 목적이 건물구내 밖에 있는 동안에 생긴 도난
- 6. 재고를 조사할 때 발견된 손해
- 7. 사기 또는 횡령으로 인한 손해
- 8. 보험의 목적이 들어있는 건물을 계속하여 72시간 이상 비워둔 사이에 생긴 도난
- 9. 외부로부터의 침입이 없이 생긴 분실 도는 망실의 손해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가재 도난위험담보 특별약관, 귀중품 도난위험담보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급배수설비 누출위험부보장 특별약관

제1조(제외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 및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6호에도 불구하고, 급배수설비가 누수 또는 방수됨에 따라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2조(준용규정)

건물에 부착된 유리위험부보장 특별약관

제1조(제외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 및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3호에도 불구하고, 건물에 부착된 유리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2조(준용규정)

건물위험부보장 특별약관

제1조(제외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에도 불구하고, 보험의 목적인 건물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2조(준용규정)

상품다수구매자 보험계약 특별약관

제1조(적용범위)

- ① 이 상품다수구매자 보험계약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은 상품판매자 가 자기의 관리하에 운영·유지되는 상품구매자 다수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 ② 제1항의 상품구매자란 각종 재화(주유, 물품 등), 용역(간병, 가사도우미 등) 및 서비스(금융서비스 등)를 해당 기업으로 부터 구매하는 자를 말합니다.
- ③ 제1항의 총 피보험자수는 100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제2조(보험계약자)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자는 제1조(적용범위)의 상품구매자 다수를 대표하여 보험계약상의 모든 권리, 의무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3조(보험가입금액)

피보험자의 보험가입금액은 동일하게 책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4조(피보험자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 ① 보험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를 증가, 감소 또는 교체코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② 이 계약기간 중 피보험자 감소의 경우는 당해 피보험자의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하며,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되는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은 이 계약의 남은 보험기간으로 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추가 또는 환급보험료는 일단위로 계산하여 받거나 돌려드립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되는 해당 피보험자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제5조(보험료의 정산)

- ① 회사는 제4조(피보험자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료를 다음과 같이 정산합니다.
 - 1. 계약자는 매월 10일까지 전월말까지의 피보험자수에 관한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 야 합니다. 그러나 계약이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효력상실 또는 해지일까

지의 보험료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효력상실 또는 해지 즉시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2. 회사는 보험기간중이나 보험기간 만료후 보험료를 산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자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 3. 회사는 보험기간 만료와 동시에 피보험자수에 따라 산출된 확정보험료와 계약을 체결할 때 산출한 예치보험료를 비교하여 그 차액을 정산합니다.
- ② 회사는 제4조(피보험자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정산 되기 이전일지라도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된 피보험자에 대해 생긴 손해를 보상합니 다.

제6조(보험료의 환급)

계약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32조(보험료의 환급)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미 지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을 돌려드립니다.

제7조(준용규정)

단체취급 특별약관(1)

제1조(계약의 적용범위)

이 특별약관은 아래에 정한 단체를 제외한 5인 이상의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이하 "단체취급 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한하여 적용합니다.

1. 제1종 단체

동일한 회사, 사업장, 관공서, 국영기업체, 조합 등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단체. 다만, 사업장, 직제, 직종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의 단체소속 여부는 관련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를 것

- 2. 제2종 단체
 -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변호사회, 의사회 등 동업자단체로서 5인 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단체
- 3. 제3종 단체
 - 그 밖에 단체의 구성원이 명확하고 위험의 동질성이 확보되어 계약의 일괄적인 관리가 가능한 단체로서 5인 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단체
- 4. 상품다수구매자 단체

상품판매자가 자기의 관리 하에 운영, 유지되는 상품구매자(각종 재화, 용역 및 서비스의 구매자를 말합니다) 다수를 피보험자로 하는 100인 이상의 단체

제2조(계약자)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는 제1조(계약의 적용범위)의 단체를 대표하는 보험계약상의 모든 권리, 의무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3조(피보험자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 ① 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를 증가, 감소 또는 교체코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② 이 계약기간 중 피보험자 감소의 경우는 당해 피보험자의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하며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되는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은 이 계약의 남은 보험기간으로 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추가 또는 환급보험료는 일단위로 계산하여 받거나 돌려 드립니다.
-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되는 해당 피보험자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④ 제1항에 따라 피보험자가 교체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 교체전 계약과 동일한 보장조건 및 인수기준에 따라 가입될 수 있으며, 피보험자 교체시점부터 잔여 보험기간(피보험자 교체전 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까지 보상하여 드립니다.

|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
| |
| |
| |
| |
| |
| |
| |
| |

단체취급 보험료정산 추가특별약관(1)

제1조(보험료의 정산)

- ① 회사는 단체취급 특별약관(I) 제3조(피보험자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제2항 및 보통약 관 제15조(계약 후 알릴의무)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보험료를 정산합니다.
- ② 회사는 단체취급 특별약관(I) 제3조(피보험자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제3항과 관계없이 보험료가 정산되기 이전 일지라도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된 피보험자에 대해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피보험자의 명부)

보험계약자는 항상 피보험자의 명부를 비치하여 회사가 열람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제3조(보험료의 정산방법)

보험료는 피보험자 정보의 변경을 기초로 하여 다음과 같이 정산합니다.

- ① 보험계약자는 매월 10일까지 전월말까지의 피보험자 정보의 변경에 관한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계약이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효력상실 또는 해지일까지의 보험료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효력상실 또는 해지 즉시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② 회사는 보험기간중이나 보험기간 만료 후 보험료를 산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될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보험기간 만료 후 동시에 피보험자 정보의 변경에 따라 산출된 확정보험료와 계약체결 시 산출한 예치보험료를 비교하여 그 차액을 정산합니다.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 정보의 변경에 관한 서류 제출 시기는 계약자와 별도로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단체취급 특별약관(Ⅰ) 및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체취급 특별약관(॥)

제1조(계약의 적용범위)

이 특별약관은 아래에 정한 단체를 제외한 5인 이상의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이하 "단체취급 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한하여 적용합니다.

1. 제1종 단체

동일한 회사, 사업장, 관공서, 국영기업체, 조합 등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단체. 다만, 사업장, 직제, 직종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의 단체소속 여부는 관련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를 것

2. 제2종 단체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변호사회, 의사회 등 동업자단체로서 5인 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단체

3. 제3종 단체

그 밖에 단체의 구성원이 명확하고 위험의 동질성이 확보되어 계약의 일괄적인 관리가 가능한 단체로서 5인 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단체

4. 상품다수구매자 단체

상품판매자가 자기의 관리 하에 운영, 유지되는 상품구매자(각종 재화, 용역 및 서비스의 구매자를 말합니다) 다수를 피보험자로 하는 100인 이상의 단체

제2조(대표계약자)

- ① 제1조(계약의 적용범위)에 정한 단체의 보험료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다수 계약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받아 대표계약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 ② 대표계약자는 개별 계약자를 대리하여 회사에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는 보험증권, 약관, 납입보험료에 대한 영수증을 대표계약자에게 드립니다.
- ③ 위 제1항 내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별 계약자는 다른 계약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자의 권리와 의무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3조(피보험자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 ① 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를 증가, 감소 또는 교체코자 하는 경우에는 대표계약자, 개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② 이 계약기간 중 피보험자 감소의 경우는 당해 피보험자의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하며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되는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은 이 계약의 남은 보험기간으로 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추가 또는 환급보험료는 일단위로 계산하여 받거나 돌려 드립니다.

-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되는 해당 피보험자 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④ 제1항에 따라 피보험자가 교체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 교체전 계약과 동일한 보장조건 및 인수기준에 따라 가입될 수 있으며, 피보험자 교체시점부터 잔여 보험기간(피보험자 교체전 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까지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4조(준용규정)

단체취급 보험료정산 추가특별약관(11)

제1조(보험료의 정산)

- ① 회사는 단체취급 특별약관(II) 제3조(피보험자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제2항 및 보통약 관 제15조(계약 후 알릴의무)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보험료를 정산합니다.
- ② 회사는 단체취급 특별약관(II) 제3조(피보험자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제3항과 관계없이 보험료가 정산되기 이전 일지라도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된 피보험자에 대해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피보험자의 명부)

보험계약자는 항상 피보험자의 명부를 비치하여 회사가 열람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제3조(보험료의 정산방법)

보험료는 피보험자 정보의 변경을 기초로 하여 다음과 같이 정산합니다.

- ① 보험계약자는 매월 10일까지 전월말까지의 피보험자 정보의 변경에 관한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계약이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효력상실 또는 해지일까지의 보험료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효력상실 또는 해지 즉시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② 회사는 보험기간중이나 보험기간 만료 후 보험료를 산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될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보험기간 만료 후 동시에 피보험자 정보의 변경에 따라 산출된 확정보험료와 계약체결 시 산출한 예치보험료를 비교하여 그 차액을 정산합니다.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 정보의 변경에 관한 서류 제출 시기는 계약자와 별도로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단체취급 특별약관(Ⅱ) 및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체계약 특별약관

제1조(계약의 적용 범위)

- ① 피보험자가 다음중 한가지의 단체에 소속되어야 하며, 단체를 대표하여 계약자로 된 자가 단체보험 계약상의 모든 권리, 의무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 1. 제1종 단체

동일한 회사, 사업장, 관공서, 국영기업체, 조합 등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단체. 다만, 사업장, 직제, 직종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의 단체소속 여부는 관련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2. 제2종 단체
 -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변호사회, 의사회등 동업자단체로서 5인 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단체
- 3. 제3종 단체
 - 그밖에 단체의 구성원을 확정시킬 수 있고 계약의 일괄적인 관리가 가능한 단체로 서 5인 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단체
- ② 제1항의 대상단체에 소속된 자로서 동일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5인 이상의 피보험자로 피보험단체를 구성하여야 하며, 단체 구성원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1. 단체의 내규에 의한 복지제도로서 노사합의에 의하며, 보험료의 일부를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2.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단체는 내규에 의해 단체의 대표자와 보험회사 가 협정에 의해 체결하여야 합니다.

제2조(상법 제735조3의 적용)

- ① 제1조(계약의 적용 범위)의 단체가 피보험자를 확정할 수 있고 계약의 일괄적 관리가 가능하며, 규약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되며, 계약자에게만 보험증권을 드릴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의 규약은 보험의 종류 및 일괄 가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동의 또는 협의를 통하여 피보험자들의 의사가 규약에 반영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보험수익자를 계약자 등 피보험자의 이해에 반하는 자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이 규약에 반영되어야 하며, 반영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③ 보험회사는 계약자를 통해 단체의 규약이 제2항을 충족하고 있는 지 확인을 해야 하며, 계약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3조(단체요율의 적용)

- ① 제1조의 단체는 단체요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3종 단체는 구성원이 명확하고 위험의 동질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 ② 단체 구성원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대상단체의 위험과 피보험단체의 위험의 동질성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제4조(보험의 목적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 ①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을 증가, 감소 또는 교체코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 다.
- ② 이 계약기간 중 보험의 목적 감소의 경우는 당해 보험의 목적의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하며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되는 보험의 목적의 보험기간은 이 계약의 남은 보험기간으로 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추가 또는 환급보험료는 일단위로 계산하여 받거나 돌려 드립니다.
-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되는 해당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④ 제1항에 따라 보험의 목적이 교체되는 경우에는 보험의 목적 교체전 계약과 동일한 보장조건 및 인수기준에 따라 가입될 수 있으며, 보험의 목적 교체시점부터 잔여 보험기간(보험의 목적 교체전 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까지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5조(개별계약으로의 전환)

- ① 피보험자가 퇴직 등의 사유로 인하여 피보험단체에서 탈퇴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한 경우에 한하여 탈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개별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보험자는 개별계약의 계약자가 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개별계약으로 전환시에는 전환후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은 이 계약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 또는 환급되는 보험료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일단위로 계산하여 받거나 돌려 드립니다.

제6조(보험증권의 발급)

- ① 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증권을 드려야 하고, 그 약관의 주요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 ② 보험계약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개별 피보험자에게는 가입증명서를 발급하여 드립니다.

제7조(적용상의 특칙)

계약자가 아닌 단체의 소속원이 보험료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원 이 계약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8조(준용규정)

단체계약 보험료정산 추가특별약관

제1조(보험료의 정산)

- ① 회사는 단체계약 특별약관(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 제4조(보험의 목적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제2항 및 보통약관 제15조(계약 후 알릴의무)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추가특별약
- ② 회사는 특별약관 제4조(보험의 목적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정산되기 이전일지라도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된 피보험자에 대해 생긴 손해를 보상합니다.

제2조(피보험자의 명부)

계약자는 항상 피보험자 명부를 비치하여 회사가 열람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합니다.

제3조(예치보험료)

예치보험료는 계약체결일 이전 1개월 동안 1일 평균인원수에 정해진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제4조(보험료의 정산방법)

보험료는 피보험자 정보의 변경을 기초로 하여 다음과 같이 정산합니다.

- 1. 계약자는 매월 10일까지 전월말까지의 피보험자 정보의 변경에 관한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계약이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효력상실 또는 해지일까지의 보험료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효력상실 또는 해지 즉시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2. 회사는 보험기간중이나 보험기간 만료후 보험료를 산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될 경우에는 계약자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 3. 회사는 보험기간 만료 후 피보험자 정보의 변경에 따라 산출된 확정보험료와 계약을 체결할 때 산출한 예치보험료를 비교하여 그 차액을 정산합니다.
- 4. 제1호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 정보의 변경에 관한 서류 제출 시기는 계약자와 별도로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단체계약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단체계약 보험기간 설정 추가특별약관

제1조(적용범위)

이 추가특별약관은 단체계약 특별약관(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 제4조(보험의 목적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새로이 증가되는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을 정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제2조(보험기간)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계약기간중에 새로이 증가된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은 계약자가 요청하는 기간으로 합니다.

제3조(보험료의 납입)

- ① 계약자는 새로이 증가된 피보험자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된 추가보험료를 납입하여 야 합니다.
- ② 새로이 증가된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이 시작된 후라도 다른 약정이 없으면 추가 보험료를 받기 전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단체계약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보험료분납 특별약관 |

제1조(보험료의 분납)

계약자는 이 계약의 연간 (보험기간이 공사기간 등 일정한 구간으로 설정되는 계약에 대해서는 증권당) 최종 적용보험료가 ()원 이상인 경우 보험료를 ()회에 분할하여 회사에 납입합니다.

제2조(나눠 내는 보험료의 납입)

① 계약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 제1회 나눠 내는 보험료를 납입하고 제2회 이후의 나눠 내는 보험료는 아래에 기재된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회 분납: 제 1회: 계약의 청약일 (총 보험료의 ()% 해당액)

제()회: 년 월 일(총 보험료의()% 해당액)

- ② 보험기간이 시작된 후라도 제1항의 제1회 나눠 내는 보험료를 납입하기 전에 생긴 사고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③ 보험기간동안 이 계약의 보험요율이 변경된 경우라도 이 특별약관에 따라 납입하는 분납보험료는 변경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5조(계약후 알릴 의무)에 따라 보험료가 변경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이하「특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계약자」라 합니다), 피보험 자 및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이하「수익자」라 합니다)가 모두 동일한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에 적용됩니다.

제2조(특별약관의 체결 및 소멸)

- ① 이 특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의 승낙으로 부가되어집니다.
- ②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계약이 해지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제3조(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 ① 보험계약자는 보통약관 또는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체결시 또는 계약체결 이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1인을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이하, "지정대리청구인"이라 합니다)으로 지정(제4조에 의한 변경 지정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정대리청구인은 보험금청구 시에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1. 피보험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 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 2. 피보험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험자의 3촌 이내의 친족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이 지정된 이후에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 (보험금을 받는 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정된 지정대리청구인의 자격은 자동적으로 상실된 것으로 봅니다.

제4조(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을 변경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회사는 변경 지정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1. 지정대리청구인 변경신청서(회사양식)
- 2. 보험증권
- 3. 지정대리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등)
- 4.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

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제5조(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 ① 지정대리청구인은 제6조(보험금 등 청구 시 구비서류)에 정한 구비서류 및 제1조(적용대상)의 수익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회사의 승낙을 얻어 제1조(적용대상)의 수익자의 대리인으로서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가 보험금을 지정대리청구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이후 보험금 청구를 받더라 도 회사는 이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6조(보험금 등 청구 시 구비서류)

지정대리청구인은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1. 청구서(회사양식)
- 2. 사고증명서
-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 4. 피보험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5. 피보험자 및 지정대리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 6. 기타 지정대리청구인이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부표1>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보통약관 제7조 제2항 관련)

| 기 간 | 지 급 이 자 |
|------------------------|----------------------|
|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 지급기일의 31일이후부터 60일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4.0%) |
| 지급기일의 61일이후부터 90일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6.0%) |
| 지급기일의 91일이후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8.0%) |

주) 보험계약대출이율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적용합니다.

<부표2>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실화(대물)배상책임위험 특별약관 제5조 2항, 임차자배상책임위험(화재, 폭발, 파열) 특별약관 제6조 제2항 관련)

| 기 간 | 지 급 이 자 |
|------------------------|----------------------|
|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 지급기일의 31일이후부터 60일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4.0%) |
| 지급기일의 61일이후부터 90일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6.0%) |
| 지급기일의 91일이후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8.0%) |

주) 보험계약대출이율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적용합니다.

법률조문 해설

| 법률조문 | 용어 해설 |
|------------------------|---|
| [민법 제27조(실종 의 선고)] |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
| [민법 제777조(친 족의 범위)] |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 1. 8촌이내의 혈족 2. 4촌이내의 인척 3. 배우자 |
| [전자서명법 제2조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자문서"라 함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어 송신 또는 수신되거나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2. "전자서명"이라 함은 서명자를 확인하고 서명자가 당해 전자문서에 서명을 하였음을 나타내는데 이용하기 위하여 당해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3. "공인전자서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추고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전자서명을 말한다. 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할 것다. 서명 당시 가입자가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지배·관리하고 있을 것 다.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서명에 대한 변경여부를 확인할수 있을 것 다.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할수 있을 것 4. "전자서명생성정보"라 함은 전자서명을 생성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

| 법률조문 | 용어 해설 |
|--|---|
| [편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 5. "전자서명검증정보"라 함은 전자서명을 검증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6. "인증"이라 함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행위를 말한다. 7. "인증서"라 함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 등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8. "공인인증서"라 함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하는 인증서를 말한다. 9. "공인인증업무"라 함은 공인인증서의 발급, 인증관련 기록의 관리등 공인인증역무를 제공하는 업무를 말한다. 10. "공인인증기관"이라 함은 공인인증역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를 말한다. 11. "가입자"라 함은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인증받은 자를 말한다. 12. "서명자"라 함은 전자서명생성정보를 보유하고 자신이 직접 또는 타인을 대리하여 서명을 하는 자를 말한다. 13.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고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영상 및 생체특성 등에 관한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 |
| [신용정보의이용및 보호에관한법률 제 16조(수집·조사 및 처리의 제한)제2항] | 이하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②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의 질병에 관한 정보를 수집·조사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려면 미리 제32조제1항에 따른 해당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으로만 그 정보를 이용하여야 한다. |
| [신용정보의이용및 보호에관한법률 제 32조(개인신용정보 의 제공·활용에 대 한 동의)] | ①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때마다 미리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존에 동의한 목적 또는 이용 범위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법률조문 | 용어 해설 |
|------|--|
| | 1. 서면 |
| | 2.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 |
| | 자문서(「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
| | 말한다) |
| | 3.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내용 및 제공 목적 등을 고려하여 정보 |
| | 제공 동의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유무선 통신 |
| | 으로 개인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 |
| | 4. 유무선 통신으로 동의 내용을 해당 개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
| | 받는 방법. 이 경우 본인 여부 및 동의 내용, 그에 대한 해당 |
| | 개인의 답변을 음성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유지하여야 |
| |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사후 고지절차를 거친 |
| | 다. |
|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 |
| | ②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
| | 제공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신용 |
| | 정보주체로부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
| |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을 때마다 개별적으로 동의(기존에 동의 |
| | 한 목적 또는 이용 범위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개인 |
| | #지하기 위한 경우는 제최한다/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개인 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시 신용등 |
| | 급이 하락할 수 있는 때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이를 고지 |
| | 하여야 한다. |
| | ③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이 개인신용정보를 제2항에 |
| | 따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 |
| | 가 제2항에 따른 동의를 받았는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
| |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 |
| | ④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과 관련하여 동 |
| | 의를 받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비스 제공 |
| | 을 위하여 필수적 동의사항과 그 밖의 선택적 동의사항을 구분 |
| | 하여 설명한 후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필수적 동의 |
| | 사항은 서비스 제공과의 관련성을 설명하여야 하며, 선택적 동 |
| | 의사항은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 |

| 법률조문 | 용어 해설 |
|------|---|
| | 여야 한다. |
| | ⑤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주체가 선택적 동의사항에 동의하지 |
| | 아니한다는 이유로 신용정보주체에게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 |
| | 서는 아니 된다. |
| | ⑥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
| |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
| | 적용하지 아니한다. |
| | 1. 신용정보회사가 다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과 |
| | 서로 집중관리·활용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
| | 2.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우로서 제17조제2항에 따라 신용정 |
| | 보의 처리를 위탁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
| | 3. 영업양도·분할·합병 등의 이유로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 |
| | 를 이전하면서 그와 관련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 | 4. 채권추심(추심채권을 추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인가·허가 |
| | 의 목적, 기업의 신용도 판단, 유가증권의 양수 등 대통령령 |
| | 으로 정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
| | 5.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제공하는 |
| | 경우 |
| | 6. 범죄 때문에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심각한 위험 발생이 |
| | 예상되는 등 긴급한 상황에서 제5호에 따른 법관의 영장을 |
| |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로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 |
| | 관의 요구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신용정보를 |
| | 제공받은 검사는 지체 없이 법관에게 영장을 청구하여야 하 |
| | 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영장을 |
| | 청구하여야 하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때부터 36시간 |
| | 이내에 영장을 발부받지 못하면 지체 없이 제공받은 개인신 |
| | 용정보를 폐기하여야 한다. |
| | 7.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질문·검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관 할 관서의 장이 서면으로 요구하거나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 |
| | 할 전체의 성이 서면으로 요구하거나 조세에 전인 법률에 따 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의 제공을 요구함에 따라 제공 |
| | 다 제출되구가 쓰는 피제지표되 제공을 표구함에 떠나 제공 하는 경우 |
| | 8. 국제협약 등에 따라 외국의 금융감독기구에 금융회사가 가지 |

| 법률조문 | 용어 해설 |
|---------------|---|
| | 고 있는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 |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질서문란행위자 및 기업의 과점주 |
| | 주, 최다출자자 등 관련인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 |
| | 를 제공하는 경우 |
| | 10.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
| | ⑦ 제6항 각 호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자 또 |
| | 는 제공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신용정보 |
| | 의 제공 사실 및 이유 등을 사전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려 |
| | 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
| | 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또는 그 밖에 유사한 방법을 통하여 |
| | 사후에 알리거나 공시할 수 있다. |
| | ⑧ 제6항제3호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신용정보 |
| | 제공·이용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공하는 신용정보 |
| | 의 범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금융위원회의 |
| |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 ⑨ 제8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해당 |
| | 개인신용정보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 거래 중인 |
| |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와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 | ⑩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 |
| | 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신원(身元)과 이용 목적을 확인하여야 한다. |
| | (1)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한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제1항에 따라 미 |
| | 리 개별적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
| |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
| | 개인신용정보는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 |
| | 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하여 |
| [신용정보의이용및 | 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 |
| 보호에관한법률 제 | 하지 아니하다. |
| 33조(개인신용정보 | 1. 개인이 제32조제1항 각 호의 방식으로 이 조 각 호 외의 부분 |
| 의 이용)] | 본문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목적에의 이용에 동의한 경우 |
| | 2. 개인이 직접 제공한 개인신용정보(그 개인과의 상거래에서 생긴 |
| | 신용정보를 포함한다)를 제공받은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상품 |

| 법률조문 | 용어 해설 |
|--|--|
| | 과 서비스를 소개하거나 그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제32조제6항 각 호의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경우 |
| [신용정보의이용및 보호에관한법률 시 행령 제28조(개인신 용정보의 제공·활용 에 대한 동의)] | ① 삭제 ②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동의 방식의 특성상 동의 내용을 전부 표시하거나 알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인터 넷 홈페이지 주소나 사업장 전화번호 등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동의를 받을 수 있다. 1.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4.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 기관은 제외한다)의 정보 보유 기간 및 이용 기간 ③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법 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유무선 통신을 통하여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④ 법 제3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란 정보제공 동의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활용함으로써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동의 내용을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여 동의를 받는 방식을 말한다. ⑤ 제4항의 방식으로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에 관한 동의를 받는 경우 신용정보제공·이용자와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정보 제공 동의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채택하여 활용하여야한다. 1.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유형·특성·위험도 |

| 법률조문 | 용어 해설 |
|------|--|
| | 2.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또는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 |
| | 기관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의 업무 또는 |
| | 업종의 특성 |
| | 3. 정보 제공 동의를 받아야 하는 신용정보주체의 수 |
| | ⑥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 |
| | 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
| | 해당 개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동의방식의 |
| | 특성상 동의 내용을 전부 표시하거나 알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
| |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나 사업장 전화번호 등 동의 |
| |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동의를 받을 수 있다. |
| | 1.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자 |
| | 2.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3. 제공받는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
| | 3. 제공본은 개인선용정보의 정복 4.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것에 대한 동의의 효력기간 |
| | (7)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은 |
| |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가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동 |
| | 의를 받았는지를 서면, 전자적 기록 등으로 확인하고, 확인한 |
| | 사항의 진위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
| | ® 법 제32조제4항 전단에 따라 신용정보회사등이 필수적 동의사항 |
| | 과 그 밖의 선택적 동의사항을 구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
| | 사항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 | 1. 신용정보주체가 그 동의사항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 |
| | 신용정보주체와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를 설정·유지할 수 |
| | 없는지 여부 |
| | 2.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그 동의사항에 대하여 동의함으로써 제 |
| | 공·활용되는 개인신용정보가 신용정보회사등과의 상거래관계 |
| | 에 따라 신용정보주체에게 제공되는 재화 또는 서비스(신용 |
| | 정보주체가 그 신용정보회사등에 신청한 상거래관계에서 제 |
| | 공하기로 한 재화 또는 서비스를 그 신용정보회사등과 별도 |
| | 의 계약 또는 약정 등을 체결한 제3자가 신용정보주체에게 |
| |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지 |
| | 여부 |

| 법률조문 | 용어 해설 |
|------|--------------------------------------|
| | 3. 신용정보주체가 그 동의사항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하면 법 |
| |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지 여부 |
| | ⑨ 신용정보회사등이 법 제32조제4항 전단에 따라 필수적 동의 사 |
| | 항과 그 밖의 선택적 동의사항을 구분하여 동의를 받는 경우 동 |
| | 의서 양식을 구분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용정보주체가 각 동의사 |
| | 항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 ⑩ 법 제32조제6항제4호에서 "채권추심(추심채권을 추심하는 경우 |
| | 만 해당한다), 인가·허가의 목적, 기업의 신용도 판단, 유가증권 |
| | 의 양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이란 다음 각 호의 목적 |
| | 을 말한다. |
| | 1. 채권추심을 의뢰한 채권자가 채권추심의 대상이 되는 자의 |
| | 개인신용정보를 채권추심회사에 제공하거나 채권추심회사로 |
| | 부터 제공받기 위한 목적 |
| | 2. 채권자 또는 채권추심회사가 변제기일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
| | 아니한 자 또는 채권추심의 대상이 되는 자에 대한 개인신용 |
| | 정보를 신용조회회사로부터 제공받기 위한 목적 |
| | 3. 행정기관이 인가·허가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신용조회회사 |
| | 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기 위한 목적 |
| | 4. 해당 기업과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
| |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그 기업의 대표자 및 제2조제1항제3호 |
| | 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개인신용정보를 신용 |
| | 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로부터 제공받기 위한 목적 |
| | 5. 제21조제2항에 따른 금융기관이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
| |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또는 어음·수표 소지인이 어음· |
| | 수표의 발행인, 인수인, 배서인 및 보증인의 변제 의사 및 변 |
| | 제자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 |
| | 사로부터 어음·수표의 발행인, 인수인, 배서인 및 보증인의 |
| |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기 위한 목적 |
| | 6. 「민법」 제450조에 따라 지명채권을 양수한 신용정보제공· |
| | 이용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지 |
| | 명채권의 채무자의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 |
| | 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거나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 |

| 법률조문 | 용어 해설 |
|------|--|
| | 기관으로부터 제공받기 위한 목적 |
| | 가. 지명채권의 양도인이 그 지명채권의 원인이 되는 상거래 |
| | 관계가 설정될 당시 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
| | 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채무자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 |
| | 거나 제공받는 것에 대하여 해당 채무자로부터 동의를 |
| | 받은 경우 |
| | 나.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그 지명채권의 채무자의 개인 |
| | 신용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 |
| | ⑪ 법 제32조제6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질서문란행 |
| | 위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 | 1. 부정한 목적으로 다른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식별정보(제29조 |
| | 에서 정하는 정보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이용하 |
| | 여 금융거래 등 상거래를 하거나 그 상거래를 하려는 타인에 |
| | 게 자신의 개인식별정보를 제공한 자 |
| | 2. 부정한 목적으로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거래상대방 |
| | 에게 위조·변조되거나 허위인 신용정보를 제공한 자 |
| | 3. 대출사기, 보험사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 |
| | 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한 거래 또는 이와 유사한 |
| | 금융거래 등 상거래를 한 자 |
| |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 |
| | 정·간이회생절차개시결정·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파산선고 또 |
| | 는 이와 유사한 결정이나 판결을 받은 자 |
| | 5. 그 밖에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금융질서를 문란하 |
| | 게 한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
| | ⑫ 신용정보회사등이 법 제32조제7항 본문에 따라 신용정보주체에 |
| | 게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사실 및 이유 등을 사전에 알리는 경우 |
| | 와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사후에 알리거 |
| | 나 공시하는 경우에 그 제공의 이유 및 그 알리거나 공시하는 |
| | 자별로 알리거나 공시하는 시기 및 방법은 별표 2의2와 같다. |
| | ⑬ 법 제32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5조제1항제1 |
| | 호부터 제21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 |
| | 다. |

| 법률조문 | 용어 해설 |
|------------|--------------------------------------|
| | ⑭ 법 제32조제8항에서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범위 등 대통령령으 |
| | 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공하는 개인신용정보의 범위, 제공받는 |
| | 자의 신용정보 관리·보호 체계를 말한다. |
|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 |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
| | 수 있다. |
| |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
| |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
| | 불가피한 경우 |
| |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
| | 불가피한 경우 |
| |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 |
| | 한 경우 |
| |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 |
| | 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 |
| [개인정보보호법 | 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
| 제15조(개인정보의 |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 수집·이용)] |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 |
| | 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 |
| | 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 |
| | 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
|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
| |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
| |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
| | 한다. |
|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 |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 |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 |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 |
| | 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 [개인정보보호법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
| 제17조(개인정보의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

| 법률조문 | 용어 해설 |
|----------------------------------|--|
| 제공)] | 같다)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 제1항제2호·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국외의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하며, 이 법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
|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동의를 받 는 방법)]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 주체(제6항에 따른 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각각 동의를 받아야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의 동의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받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항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내용을 행정안전부령으로정하는 방법에 따라 명확히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하여야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에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정보주체와의 계약 체결 |

| 법률조문 | 용어 해설 |
|------------|---------------------------------------|
| |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와 |
| |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한 개인정보를 구분하여야 한다. 이 경 |
| | 우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 |
| | 보처리자가 부담한다. |
| |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 |
| | 매를 권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는 |
| | 때에는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 |
| | 의를 받아야 한다. |
| |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제3항에 따라 선택적으로 동의할 |
| | 수 있는 사항을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제4항 및 제18조제2항제1 |
| | 호에 따른 동의를 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
| |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 |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 |
| | 하여 이 법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
| |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
| |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해당 아동으로 |
| | 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다. |
|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
| | 받는 세부적인 방법 및 제6항에 따른 최소한의 정보의 내용에 |
| |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의 수집매체 등을 고려하여 대통 |
| | 령령으로 정한다. |
|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
| |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 |
| | 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
| | 는 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
| [개인정보보호법 | 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
| 제23조(민감정보의 | 하다. |
| 처리 제한)] |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
| |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
| | 동의를 받은 경우 |
| | 2.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
| |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 |

| 법률조문 | 용어 해설 |
|------------|---------------------------------------|
| | 우에는 그 민감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 |
| | 니하도록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
| | 한다. |
|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에 따라 |
| |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대통령 |
| | 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고유식별정보"라 한다)를 처리할 수 |
| | 없다. |
| |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
| |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
| | 동의를 받은 경우 |
| | 2.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 |
| | 용하는 경우 |
| [개인정보보호법 | ② 삭제 |
| 제24조(고유식별정 |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
| 보의 처리 제한)] | 경우에는 그 고유식별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 |
| | 손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 |
| |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종류·규모, 종업원 수 및 |
| |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 |
| | 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
| | 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 |
| | 로 조사하여야 한다. |
| |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제 |
| | 4항에 따른 조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 | 1. "손해보험회사"란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화재보험업의 허 |
| | 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
| [화재로 인한 재해 | 2.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이란 화재로 인한 건물의 손해와 |
| 보상과 보험가입에 | 제4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을 말한다. |
| 관한 법률 제2조 | 3. "특수건물"이란 국유건물·공유건물·교육시설·백화점·시장·의료시 |
| (정의)] | 설·흥행장·숙박업소·다중이용업소·운수시설·공장·공동주택과 그 |
| | 밖에 여러 사람이 출입 또는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건물로서 |
| | 화재의 위험이나 건물의 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 |

| 법률조문 | 용어 해설 |
|--|---|
| | 하는 건물을 말한다. |
| [화재로 인한 재해 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특수건물)] | 하는 건물을 말한다. ①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이란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물을 말한다. 1. 「국유재산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 중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이 경우 해당 건물과 같은 용도로사용하는 부속건물로서 같은 구내에 위치한 건물을 포함한다. 다만, 대통령관저(官邸)와 특수용도로사용되는 건물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건물은 제외한다. 1의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 중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이 경우 해당 건물과 같은 용도로사용하는 부속건물로서 같은 구내에 위치한 건물을 포함한다. 다만,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하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하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하 "한국지방재정공제회"라 한다) 또는 사단법인 교육시설재난공제회가 운영하는 공제 중 특약부화재보험과 같은 정도의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에 가입한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건물은 제외한다. 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3.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5.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곡광숙박업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6.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연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7. 「방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연편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
| | 8.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로 사용하 |

| 법률조문 | 용어 해설 |
|------|--|
| | 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
| | 9.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 |
| | 6호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및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
| |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 |
| | 물. 다만,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운영하는 공제 중 특약부화재 |
| | 보험과 같은 정도의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에 가입한 지방자치 |
| | 단체 및 지방공기업 소유의 건물은 제외한다. |
| | 10. 다음 각 목의 영업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 |
| | 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
| | 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게임제 |
| | 공업 |
| |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 |
| | 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
| | 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 |
| | 습장업 |
| | 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 |
| | 점영업 |
| | 마.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에 따른 일반음식 점영업 |
| | 마.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 |
| | 여입 영업 |
| | 아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
| | 영업 |
| | |
| | 학교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 |
| | 상인 건물. 다만, 사단법인 교육시설재난공제회가 운영하는 |
| | 공제 중 특약부화재보험과 같은 정도의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 |
| | 에 가입한 건물은 제외한다. |
| | 12. 「주택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 |
| | 른 공동주택(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으로서 16층 이상의 |
| | 아파트 및 부속건물. 이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 |
| | 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에 의하여 관리되는 같은 아파트 단 |

| 법률조문 | 용어 해설 |
|------------|---|
| | 지에 있는 15층 이하의 아파트를 포함한다. |
| | 1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
| | 따라 등록된 공장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 |
| | 인 건물. 이 경우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0 |
| | 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 | 14.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물. 다만, 공동주택(제12호에 따른 아 |
| | 파트는 제외한다)・창고 및 모든 층을 주차 용도로 사용하는 |
| | 건물과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운영하는 공제 중 특약부화재보 |
| | 험과 같은 정도의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에 가입한 지방자치단 |
| | 체 및 지방공기업 소유의 건물은 제외한다. |
| | 15.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으로 사 |
| | 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
| | 1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 |
| | 른 영화상영관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 |
| | 곱미터 이상인 건물 |
| | 17.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중 역사 |
| | (驛舍) 및 역 시설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역사 및 역 시설. 다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 | 게급미디 이성인 역사 및 역 시절. 다인, 인국시청세성중세외 가 운영하는 공제 중 특약부화재보험과 같은 정도의 손해를 |
| | 보상하는 공제에 가입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 소유의 |
| | 역사 및 역 시설은 제외한다. |
| | 기계 및 기계 같은 세계되는데. 18.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실내 |
| | 사격장으로 사용하는 건물 |
| | ② 제1항 제12호 및 제14호의 규정에 따른 건물의 층수 계산방법 |
| | - 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에 따르되, 건축물의 |
| | 옥상 부분으로서 그 용도가 명백한 계단실 또는 물탱크실인 경 |
| | 우 및 지하층의 경우에는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 [화재로 인한 재해 | ①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그 건물의 화재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 |
| 보상과 보험가입에 | 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제8조에 |
| 관한 법률 제4조 | 따른 보험금액의 범위에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실 |
| (특수건물 소유자 | 화책임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특수건물 소유자에게 경과 |
| 의 손해배상책임)] | 실(輕過失)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 법률조문 | 용어 해설 |
|-------------------------------|--|
| | ② 특수건물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하 |
| | 는 것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 |
| | ① 제5조에 따라 가입하는 보험의 보험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
| | 따른다. |
| [화재로 인한 재해 | 1. 화재보험: 특수건물의 시가(時價)에 해당하는 금액 |
| 보상과 보험가입에 | 2. 신체손해배상책임보험 중 사망의 경우: 피해자 1명당 50만원 |
| |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 관한 법률 제8조 | 3. 신체손해배상책임보험 중 부상의 경우: 피해자 1명당 사망자 |
| (보험금액)] | 에 대한 보험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 |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시가의 결정에 관한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 |
| | 한다. |
| | ①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특수건물 소유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
| | 보험의 보험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어야 한 |
| | 다. |
| | 1. 사망의 경우 : 피해자 1명당 1억5천만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 |
| | 게 발생한 실손해액을 지급할 것. 다만, 실손해액이 2천만원 |
| |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
| | 2. 부상의 경우 : 피해자 1명당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 |
| | 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실손해액을 지급할 것. |
| [화재로 인한 재해 | 3.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
| |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 |
| 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에 장애(이하"후유장애"라 한다)가 생긴 경우 : 피해자 1명당 |
| | 별표2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실손해 |
| 제5조(보험금액)] | 액을 지급할 것. |
| | 4. 재물에 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 사고 1건당 10억원의 범위 |
| | 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실손해액을 지급할 것 |
| | ② 제1항 각호에 따른 실손해액의 범위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
| | ③ 제1항에 따른 보험은 하나의 사고로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
| | 중 둘 이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
| | 것이어야 한다. |
| | 1. 부상당한 사람이 치료 중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
| | : 피해자 1명당 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과 제1항제2호에 따른 |

| 법률조문 | 용어 해설 |
|---------------------------------|--------------------------------------|
| = | B액을 더한 금액을 지급할 것 |
| 2. | 부상당한 사람에게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 : 피해자 1명당 제1 |
| ō | 장제2호에 따른 금액과 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
| Α | l급할 것 |
| 3. | 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
| Α. | l망한 경우 : 피해자 1명당 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에서 제1항 |
| Į. | 3호에 따른 금액 중 사망한 날 이후에 해당하는 손해액을 뺀 |
| = | B액을 지급할 것 |
|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
| "(| 명"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실손해액은 |
| | 음 각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
| 1. | 화재로 인하여 사망한 때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月實收入 |
| 寄 | i)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 기간을 곱한 금액 |
| 2. | 남자 평균임금의 100일분에 해당하는 장례비 |
| 2 2 | 경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실손해액은 화재로 인하여 신체에 |
| [화재로 인한 재해 성 | 당해를 입은 경우에 그 상해를 치료하는 데에 드는 모든 비용으 |
| 보상과 보험가입에 로 | 한다. |
|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③ 영 | .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실손해액은 그 장애로 인한 노동력 |
| 제2조(실손해액)] 성 | 상실 정도에 따라 피해를 입은 당시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
| | 드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 4 9 | .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실손해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더 |
| Ē | 한 금액으로 한다. |
| 1. |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당시의 그 물건의 교환가액 또는 |
| 필 | 일요한 수리를 하거나 이를 대신할 수리비 |
| 2. | 제1호의 수리로 인하여 수입에 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수리기 |
| 2 | 난 중 그 손실액 |
| ① 선 [화재로 인한 재해 | 해보험회사는 보험금의 지급 청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 |
| [화재도 한편 재해 기 보상과 보험가입에 |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
| | 다. |
| 전면 납을 지행하는 ② 선 제8조(보험금 지 | 해보험회사는 법 제9조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
| 급)] | 나음 각호의 사항을 보험계약자에게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 |
| 1. | 보험금의 지급청구인와 수령인의 주소 및 성명 |

| 법률조문 | 용어 해설 |
|---------------------------------------|--|
| | 2. 청구액과 지급액 |
| | 3. 피해자의 주소 및 성명 |
| [상법 제657조(보 험사고발생의 통지 의무)] |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
| |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
| | ②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가 제1항의 통지의무를 |
| | 해태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증가된 |
| |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 |
| [상법 제732조(15 세미만자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 |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
| |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 다만, 심신박약자가 보험계약을 체 |
| | 결하거나 제735조의3에 따른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
| |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①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 |
| | 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731조를 적용하지 아니 |
| | 한다. |
| | ② 제1항의 보험계약이 체결된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에 대하 |
| [상법 제735조의 3(단체보험)] | 여서만 보험증권을 교부한다. |
| | ③ 제1항의 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
| | 아닌 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 |
| | 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그 피보험자의 제731조제1항에 따른 |
| |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
| | ① 이 법에서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
| |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 |
| | 을 하는 곳을 말한다. |
| |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 |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 |
| [의료법 제3조(의 | 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
| 료기관)] |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 | 가. 의원 |
| | 나. 치과의원 |
| | 다. 한의원 |
| | 2.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부·해산부·산욕부 및 신생아를 대 |
| | 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
| |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 |

| 법률조문 | 용어 해설 |
|------|------------------------------------|
| | 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 |
| | 음 각 목과 같다. |
| | 가. 병원 |
| | 나. 치과병원 |
| | 다. 한방병원 |
| | 라. 요양병원(「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
| | 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 |
| | 병원,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재 |
| | 활시설로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 |
| | 다. 이하 같다) |
| | 마. 종합병원 |
|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
| | 는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별 |
| | 표준업무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주요 민원/분쟁 사례 및 유의사항

1. 공통 및 상해 보험

1) 알릴의무 위반 관련

사례 1.

S씨는 가입전부터 질병이 있었으나 몇년 동안 보상 청구하지 않으면 괜찮다는 권유로 청약서에 기재하지 않았다가 추후 보상시 불이익이 발생됨을 인지하고 불만 제기

#<u>ala</u>|a|a|∞•i

계약전 알랠의무는 상법 제 651조(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으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청약시 반드시 보험회사가 질문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서면으로 정확히 알려야만 합니다.



사례 2.

P씨는 대수롭지 않은 치료라는 생각으로 가입 전 병원 진료에 대해 알리지 않고 가입하였다가 추후 보상시 면책 안내되어 불만 제기





계약전 알릴의무는 상법 제 651조(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으로 임의 판단으로 누락시에는 보험계약의 해지 또는 보험금 부지급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2) 자필서명 미이행 관련

사례 3.

A씨는 지인인 B설계사의 설명을 듣고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 가입을 권하였으나 남편 설득이 여의치 않자 A씨가 피보험자 서명을 대필하여 보험가입하였고 추후 보상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을 인지하고 불만 제기

유익하세®~i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받지 않으면 보상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피보험자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3) 계약유지 관련

사례 4.

K씨는 직업이 변경되어 보험사에 통지하였으나 직업의 위험도가 변경되어 현재 계약의 보험료 및 담보가 변경됨을 안내받고 불만 제기



유익하세요~!

표준약관(상해보험 게약 후 알릴 의무)에 근거하여 직업 급수(위험도)에 따라 보험료의 중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의 해지 등 가입조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배상

1) 일상(가족, 자녀) 생활중 배상책임 관련

사례 5.

피보험자가 차량 뒷좌석에서 하차중 차량문을 열고 내리던 중 옆차량을 파손한 사고로 약관 제 0조 '항공기, 선박, 차량, 총기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한 배상책임'은 면책

유익하세요~!

차량 하차중 개문발차사고는 자동차를 용법에 맞게 사용중 발생한 사고로 자동차 보험처리 적용 대상에 해당하여 일상생활 중 배상책임에서 보상되지 않습니다.



사례 6.

피보험자(미성년자)가 돌로 차량에 낚서를 하여 차량에 피해를 준 사고

유의하세요~!

피보험자의 고의 사고에 해당하여 보상하지 않으나, 판례에 따라 책임무능력자는 사리분별이 안되므로 고의로 보기 힘들다 하여 12세 이하까지는 보상을 하고 있음

3. 화재

1) 화재보험의 도난담보(명기가재) 관련

사례 7.

K씨는 화재 및 도난을 보상받고자 보험가입을 하였으나 추후 귀금속 등 귀중품은 명기가재로 등록해야 보상이 가능하다고 내용을 알고 불만 제기

유<u>의</u>하세요~!

명기가재란 한점당 300만원 이상 고가의 가재로 보험가입시 해당 내용을 명확하게 서면으로 작성하셔야 하며,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을 경우 보상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화재보험의 화재의 정의 관련

사례 8.

사용하는 열풍기(전열기)에 의해 피보험자의 소파 열변형이 발생한 사례로 약관에서 규정하는 화재의 정의에 대한 분정(피보험자는 본건 열변형이 화재라고 주장함)





약관 해석상 화재는 연소현상이 있어야 하며 열변형은 화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